

초빙교원 위촉 규정

제정	:	2007. 8. 1.
개정	:	2012. 1. 1.
개정	:	2013. 9. 1.
개정	:	2015. 8. 1.
개정	:	2025. 8.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초빙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초빙교원이라 함은 교육계 또는 해당 전공분야의 관련 기관에서 다년간의 교육 및 연구경력 또는 현장 실무경력이 있는 유명 인사를 말한다.

제3조(대상) 초빙교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사람으로 한다.

1. 국내·외 대학교 또는 전공 관련 해당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 근무한 자
2.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3.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경력과 식견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특정한 학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단기간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직위) 초빙교원의 직위는 초빙교수로 한다.

제4조의 1(임용기간) 초빙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5조(임용절차 및 제한) ① 초빙교원은 근무할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초빙교원은 해당 학과별 2인 이내로 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해당 부서장은 초빙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다음의 제반 서류를 임용 1개월 이전까지 갖추어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1. 초빙교원 추천서 1부
2. 이력서 1부
3. 학위증명서 각 1부
4.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5. 원 소속기관장 동의서(해당자) 1부

제6조(구비서류) 삭제

제7조(재임용)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초빙교원은 교육 및 연구실적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대학교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임용계약을 취소한다.

제7조의 1(재계약을 위한 심사평정) ① 재계약을 위한 심사평정표는 별표1로 한다.

② 심사평정은 교학지원처장, 소속 학과 내 전임교원 전원이 개별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

③ 심사평정의 평가영역은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강의능력과 실적,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④ 평가영역별 평점등급 및 배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A	B	C	D	E
배점	5	4	3	2	1

⑤ 재계약을 위한 평가영역별 배점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때 평균값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교학지원처장 평가영역별 배점+(학과 평가자 평가영역별 배점합/학과 평가자 수)/2} <개정 2025. 8. 1.>

⑥ 재계약을 위한 평가영역별 배점결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1. 평가영역별 평균배점이 1개영역 이상에서 2.0미만의 배점을 받을 경우
2. 평가영역별 평균배점의 전체합이 9.0미만인 경우

제8조(보수) 초빙교원의 정규강좌에 대한 강의료는 매 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강의료 외에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임무) 초빙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학기 최소 주당 3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거나, 총장이 인정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초빙교원은 임용기간 중 발표논문 또는 학술활동에서 ‘금강대학교 초빙교수’ 임을 밝혀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개정 이전의 제8조(보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 8. 1.>

초빙교원 교육실적 심사평정

가. 교육영역 평가표

피평정자 소속:

성명:

평가영역		구분	평점	평가사항	작성부서
1. 강의시수			40점	·기준점수 40점 부여 ·기준시수 미달시 시수 당 5점 감산 ·임용기간 총 시수로 산정함	교학팀
2. 학생 강의평가			30점	·상위 5% 이내 : 30점 ·상위 5% 초과 ~ 10% 이내 : 28점 ·상위 10% 초과 ~ 15% 이내 : 26점 ·상위 15% 초과 ~ 20% 이내 : 23점 ·상위 20% 초과 ~ 30% 이내 : 19점 ·상위 30% 초과 ~ 40% 이내 : 15점 ·상위 40% 초과 ~ 50% 이내 : 12점 ·상위 50% 초과 ~ 60% 이내 : 10점 ·상위 60% 초과 ~ 70% 이내 : 8점 ·상위 70% 초과 ~ 80% 이내 : 6점 ·상위 80% 초과 ~ 90% 이내 : 3점 ·상위 90% 초과 : 0점 ·학기단위 평가 후 평가 학기수로 산술평균 함	교학팀
3. 학사행정	강의계획서 입력		10점	·기한 내 100% 입력 시 10점 ·기한 내 미 입력 시 0점 ·학기단위 평가 후 평가 학기수로 산술평균 함	교학팀
	휴보강		15점	·휴강 없는 경우 또는 휴강 후 100% 보강 시 10점 ·휴강 후 미 보강 시 : 미 보강 횟수 당 3점 감산 ·학기단위 평가 후 평가 학기수로 산술평균 함	교학팀
	성적입력		5점	·기한 내 100% 입력 시 5점 ·기한 내 미 입력 시 0점 ·학기단위 평가 후 평가 학기수로 산술평균 함	교학팀
계(총점)			100점		

나. 직무영역 평가표

피평가자 소속:

성명:

평가영역 \ 구분	평점	평가사항	작성부서
1. 교수로서의 기본 자질	수(40)	교육자로서의 소양과 품행이 월등히 뛰어나며 인간관계도 월등히 우수하다.	
	우(32)	교육자로서의 소양과 품행이 뛰어하며 인간관계도 우수하다.	
	미(24)	교육자로서의 소양과 품행이 좋은 편이며 인간관계도 큰 무리가 없다.	
	양(16)	교육자로서의 소양과 품행이 낮으며 인간관계도 미흡하다.	
	가(8)	교육자로서의 소양과 품행이 불량하며 인간관계도 아주 미흡하다.	
2. 책임성	수(30)	담당업무를 끝까지 완수하고,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우(24)	담당업무를 완수하고자 노력하며, 업무수행 결과에 책임을 지고자 한다.	
	미(18)	담당업무를 대체로 과오 없이 수행하고 책임을 지고자 노력하는 편이다.	
	양(12)	업무수행의 의지가 낮으며,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한다.	
	가(6)	업무를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근무태도 및 청렴도	수(30)	복무규정을 잘 준수하고 매우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우(24)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미(18)	복무규정을 대부분 준수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편이다.	
	양(12)	가끔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청렴성이 부족하다.	
	가(6)	자주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청렴성이 매우 부족하다.	
계(총점)	100점		

- 평가자 전체 인원의 산술평균으로 하위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